공 주 시

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 람	기관의 장



제820호 2022. 7. 12.(화) 수시분

【공 고】

제2022-1546호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을 위한 공람·공고 ····· 3
제2022-1555호 공주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····· 5

회 람							

발행 공주시 (편집 시민소통담당관실 ☎ 041-840-8323)

《시보발행안내》

본 「시보」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, 제13조 및 공주시 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, 규칙, 훈령, 예규의 제정 및 개•폐사항, 인사, 공고, 고시, 의회의 집회, 개회, 휴회 및 회기의 연장, 의사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
매월(1일, 15일) 2회 정기발행 또는 수시 발행되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.(발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)

보급(배부)은 공주시 본청 모든 부서 및 산하 행정기관과 공주시 의회에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급(배부)됩니다.

상기 보급대상기관은 본 「시보」에 게재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 시 게재내용을 열람시키거나 출력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주시 공고 제2022-1546호

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을 위한 공람·공고

공주시 소학동 일원 국도23호선 연결로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 하오니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 후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7월 12일

공 주 시 장

1. 공람 기간 : 2022. 07. 12. ~ 07. 26. (14일간)
2. 공람 장소 : 공주시 도로과, 옥룡동행정복지센터
3. 주민의견 제출
   ○ 제출기한 : 2022. 7. 27(수). ○ 제 출 처 : 공람장소
   ○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
4. 공람 내용
   ○ 공주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(안) : 첨부
5. 기타
   ○ 본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(안)은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본 결정(변경)(안)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며, 향후 행정절차(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) 이행 중 본 공람·공고내용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○ 관련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도로과(☎ 041-840-8911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

1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. 교통시설

가. 도로

1)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2	8	30	주간선	2,897	소학동 구역계	신기동 지구계	일반 도로	논산행 국도23호선	'97.04.19	
변경	대로	2	8	30~97	주간선	2,897	소학동 구역계	신기동 지구계	일반 도로	논산행 국도23호선	'97.04.19	
신설	소로	1	A	10~60	보조 간선	494	대로 2-8호	소로 2-170	일반 도로	-	-	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결정(변경) 내용	결정(변경) 사유
대로2-8	대로2-8	■ 도로 폭원 변경 - 기정 = 30m - 변경 = 30~97m(증 0~67m)	■ 국도23호선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기 위해 신공주대교 접속연결로를 개설하여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자 도록폭원 변경
-	소로1-A	■ 도로 신설 - 폭원 = 10~60m - 연장 = 494m	■ 국도23호선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기 위해 연결도로 신설

공주시 공고 제2022-1555호

「공주시 통·반 설치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7월 12일

공 주 시 장

공주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○ 아파트 신축 및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통 분할 및 반 신설

○ 현지실정에 맞는 통·반 설치·조정으로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월송동 통반 신설(월송 6 ~ 7통)

읍면동	지 역	조정의견	기존	신설	조정 및 설치 사유
월송동	월송1통	통·반 신설	1통 5반	2통 12반	◦ 아파트 신축(천년나무4단지)

3. 입법예고기간 : 2022. 7. 12. ~ 2022. 8. 1. (20일간)

4. 의견제출

○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(참조 : 행정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○ 보내실 곳 : 공주시청 행정지원과(시정팀)

- 주　소 : 공주시 봉황로 1 / 우편번호: 32552
- 연 락 처 : 041-840-2043 / FAX: 041-840-2307 / 전자우편 : notre@korea.kr

5. 참고사항

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(www.gongju.go.kr) 고시.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공주시 통·반 설치에 관한 조례안

□ 의 견

입법예고(안)	의 견(안)	사 유

□ 의견제출자

- 성 명 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 :
- 주 소 :
- 연락처 :

□ 기타 참고사항 :

□ 제 출 처 : 공주시 행정지원과 시정팀 (☏ 041-840-2043)

□ 제출방법 ┌ 우편 : 충남 공주시 봉황로 1(봉황동 319) (우편번호 32552)
└ FAX : 041-840-2307. 전자우편 : notre@korea.kr

공주시 조례 제 호

공주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공주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월송동 행정리.통명란 중 월송5통 다음에 월송6통, 월송7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월송동	월송6통	1반	월송동 671,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1동 101호~1506호	
		2반	월송동 671,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2동 101호~712호	
		3반	월송동 671,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2동 801호~1312호	
		4반	월송동 671,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3동 101호~712호	
		5반	월송동 671,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3동 801호~1306호	
		6반	월송동 671,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4동 101호~812호	
		7반	월송동 671,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404동 901호~1606호	
	월송7통	1반	월송동 671,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5동 101호~610호	
		2반	월송동 671,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405동 701호~1504호	
		3반	월송동 671,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6동 101호~1004호	
		4반	월송동 671,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7동 101호~812호	
		5반	월송동 671,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8동 101호~1506호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